

- 인권주간 특집 ㉔ -

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- 1편

인권정책기본법 제정,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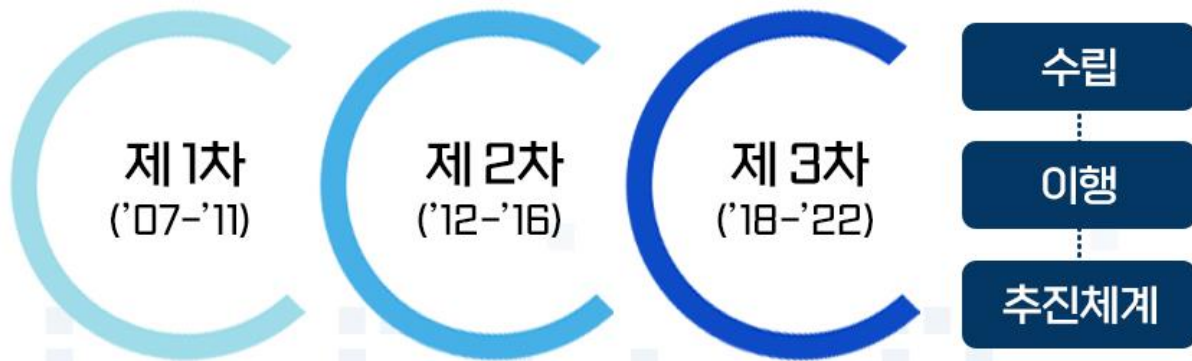


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

「인권정책기본법」 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.

법정부적 국가인권정책추진체계 마련

우리 정부는 그간 5개년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해왔습니다.
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본 계획의 수립, 이행 및 추진체계에 대한
규정이 명확해집니다.



국가인권위원회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.

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 설치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수렴

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 제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

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, 집행위원회 안건 심의 요청 가능

인권교육 실시 및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을 위한 지침, 정보공개 표준 등
인권정책 수립·이행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 가능

지방자치단체는 **인권기구 설치, 인권정책책임관 지정** 및 **지역계획**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게 됩니다.

인권기구 설치



인권정책책임관 지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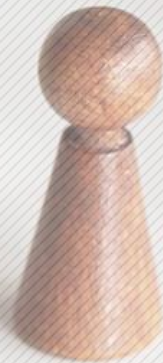
지역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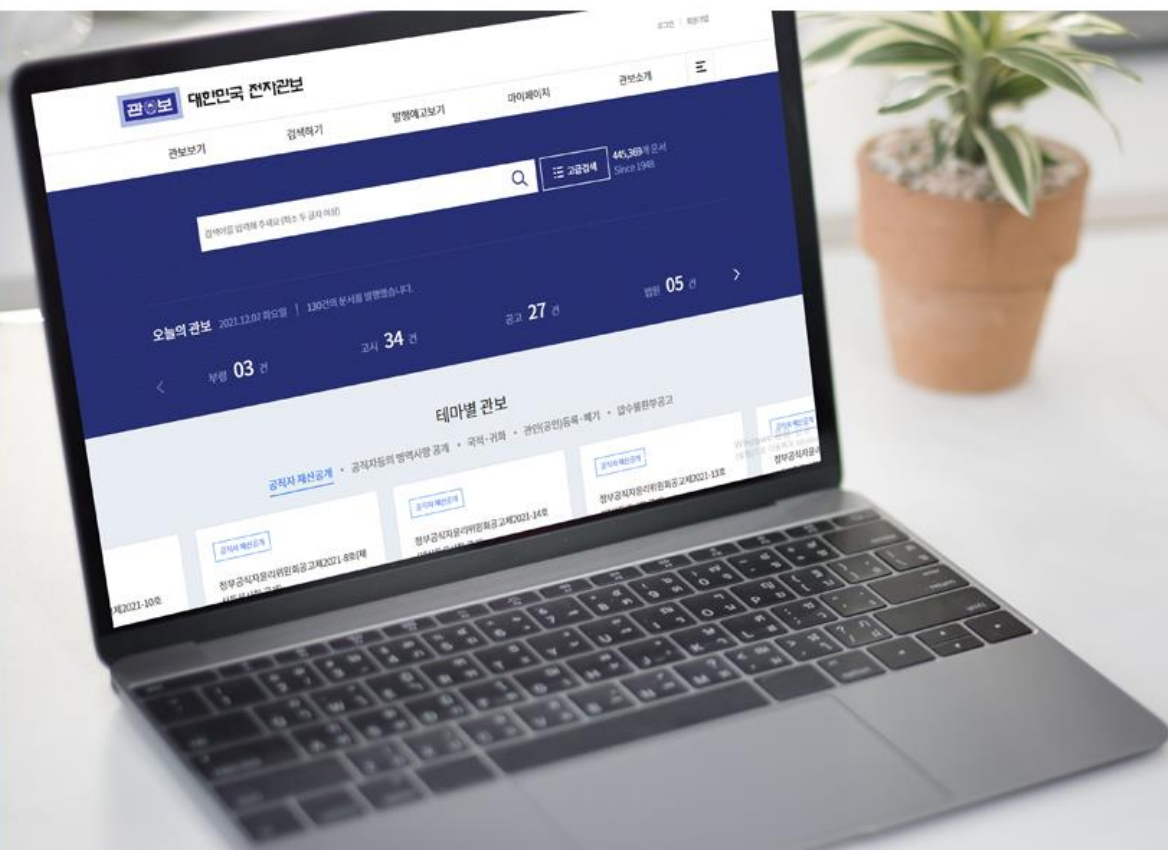
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

「인권정책기본법」 제정안에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이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.

대표적인 예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, 개인진정 견해 등이 있습니다.



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와
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**국민이 국·영문본을
직접 열람**할 수 있도록 공시됩니다.



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**인권위와
협력 주체**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다음 11편에도 이어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시
기대효과(인권교육, 기업의 인권존중책임)가 어떻게 되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.